

勞動經濟論集
第22卷 (2), 1999.12, pp. 229~242
◎ 韓國勞動經濟學會

국민연금제도의 확대가 직역간 저축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원종욱*

< 目 次 >

- | | |
|------------------------|----------|
| I. 서론 | IV. 계량분석 |
| II.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제도현황 | V. 결론 |
| III. 생애주기별 효용함수 | |

I. 서 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5인이상 9인이하 사업장,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 확대되어 1997년 12월 현재 적용대상인구는 783만명에 이른다. 1998년 12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해 도시지역자영자 890만명에게도 99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국민연금개선기획단의 전망에 따르면 9%에서 2009년 까지 유지되다가 2025년까지 18%로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같이 국민연금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확대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국민연금제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강제저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취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후대책에 실패한다는 가정하에서 또는 불충분한 수준이라는 가정하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국민들이 노후생활을 나름대로 민간금융시장을 통해 준비해 왔다고 하면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는 민간저축을 위축시키는 대체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국민연금이가입자들의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되는 특수직역연금가입자의 저축수준과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수직역연금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들의 경우 직역연금제도가 정착되어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노후대책의 수단으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가입자들의 저축수준과 봉급생활자 및 자영자의 수준과 비교해 봄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 및 보험료의 인상이 민간저축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해 보았다.

II.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제도현황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시행이후 적용대상은 1999년 1월이전까지는 18세이상 60세 미만사업장 근로자 및 농어촌지역자영자였으나 1999년 1월 개정국민연금법에 의하여 4월부터 도시지역자영자로 확대적용되었다. 보험료는 1999년 4월부터 6%에서 9%로 인상되고 국민연금개선기획단의 전망에 따르면 2010년부터 11%대로 인상된후 2025년까지 18%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급여수준은 1999년 제도개선이전기간에 대해서는 과거급여산식을 적용하고 1999년 4월 제도개선이후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급여산식을 적용하게된다. 현행급여산식에 의하면 최하위 20%계층은 평균소득의 100%, 최상위 20%계층은 평균소득의 48%, 그리고 중간소득계층은 평균소득의 70%를 수령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개정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비율은 최하위계층에 대해서는 동일하고 최상위계층은 평균소득의 46%로 그리고 중간소득계층은 평균소득의 60%로 조정되었다.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까지는 60세이고 그이후 부터는 5년간격으로 1세씩 65세 까지 상향조정된다. 최소가입연수는 개정이전에는 15년 이었으나 개정후부터는 10년으로 낮아졌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제도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급여액산정시 기준

이 되는 소득이 국민연금은 생애평균소득으로 하는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퇴직당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표 1〉 연금제도별 보험료율 및 급여방식

연금제도	도입시기	보험료율	급여수준	급여수령연령
국민연금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93~97년 : 6%(본인, 사용자, 퇴직금전환금 2%씩) -98년 이후: 9%(본인, 사용자, 퇴직금전환금 3%씩) -99년~2009: 9%(본인, 사용자 4.5%씩부담) -2010년~2014년: 11.5%(예정) -2015년~2020년: 14.1%(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9년 개정이전: 생애평균소득의 48%~100% -99년 개정이후: 생애평균소득의 46~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이전: 60세 -2013년이후: 5년간격 1세씩 상향조정
공무원연금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년이전: 11% (본인: 5.5%+정부: 5.5%) -96년이후: 13% (본인: 6.5%+정부: 6.5%) -99년이후: 15% (본인: 7.5%+정부: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시 보수월액의 50%~76%(20년 ~3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6년이전 임용자: ·20년가입후 연금 또는 일시금 ·20년미만가입: 일시금 -1996년이후 임용자: ·20년가입후 60세 이상: 연금 또는 일시금 ·20년미만: 일시금
군인연금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년이전: 11% (본인: 5.5%+정부: 5.5%) -96년이후: 13% (본인: 6.5%+정부: 6.5%) -99년이후: 15% (본인: 7.5%+정부: 7.5%) 	공무원연금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가입후 연금 또는 일시금
사학연금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년이전: 11% (본인: 5.5%+법인: 3.5%+국가: 2.0%) -96년~98년: 13% (본인: 6.5%+법인: 4.0%+국가: 2.5%) -99년이후: 15% (본인: 7.5%+법인: 4.5%+국가: 3.0%) 	공무원연금과 동일	공무원연금과 동일

또한 국민연금의 평균소득계층의 소득대체율이 46%인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이 50%로 평균적으로 대체율이 높다고 할수 있다.

III. 생애주기별 효용함수

1. 연금제도의 도입과 저축율변화

국민연금의 도입이 민간의 저축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위해 아래 식 (1)과 같은 효용함수를 정의하였다.

$$V = \int_0^R U_1 [(W(t) - sW(t))] dt + \int_R^T U_2 [S(s(t), R, W(t))] dt \quad (1)$$

$$(U'_i > 0, U''_i < 0)$$

근로자의 생애를 근로기간(R)과 은퇴기간(T-R)으로 양분하였고 근로기간에는 총소득(W)에서 저축율 s에 소득(W)을 곱한 저축액을 감한 잔여소득수준이 효용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은퇴기간(T-R)에는 근로기간중 저축의 총합에 의해 조성된 저축 S(·)가 이기간의 효용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식 (1)에서 근로기간의 저축총합은 은퇴기간의 소득과 동일하다.

$$\left(\int_0^R (sW(t)) dt = \int_R^T S(s, R, W(t)) dt \right)$$

식 (1)에서 주어진 소득수준 (W)과 은퇴시기(R)에 대해 전생애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저축율(s)은 근로기간과 은퇴기간의 한계효용을 동일하게 하는 수준일 것이다.

$$\frac{\partial V}{\partial s} = \int_R^T U'_2(s) - \int_0^R U'_1(s) = 0 \quad (2)$$

식 (2)가 의미하는 바는 연금제도이전에도 근로자들은 저축을 통하여 전생애의 효용을 극대화 할수 있는 수준의 노후대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 (1)과 같은 생애주기효용함수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효용함수는 아

래의 식 (3)과 같다.

$$\begin{aligned} V = & \int_0^R U_1 [(W(t) - \theta W(t) - sW(t)(1-\theta))] dt + \\ & \int_R^T U_2 [S(s, R, W(t)) + P(R, W(t))] dt \end{aligned} \quad (3)$$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근로기간동안 보험료, θW ,를 내야만 하며 은퇴기 간동안은 $P(R, W)$ 만큼의 연금을 받게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산식구조에 따라 두가지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다.

가) 확정각출방식 연금제도

첫 번째로, 확정각출방식(Defined Contribution)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제도에 의하면 시점 R에서 납입보험료총액의 미래가치와 은퇴후급여총액의 현재가치가 동일한 경우이다. 즉, $\int_0^R \theta W(t) dt = \int_R^T P(R, W(t)) dt$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전에 비해과 소득수준(W) 과 은퇴시기(R) 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전생애효용극대화를 총족시키는 저축수준은 이전경우와 같이 근로기간의 한계효용함수와 은퇴기간의 한계효용함수가 동일하게 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frac{\partial V}{\partial s} = \int_R^T U_2(s') - \int_0^R U_1(s') = 0 \quad (4)$$

이 경우 저축율 s' 은 식 (2)의 저축율 s 보다 적은 것을 알수 있다($s > s'$). 즉,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연금보험료의 지출(θW)이 발생되므로 저축율 줄이지 않고는 은퇴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한계효용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확정각출급여방식의 연금제도도입은 기존의 저축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확정급여방식 연금제도

두 번째는, 확정급여방식(Defined Benefit)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점 R에서 납입보험료의 총액의 미래가치가 은퇴후급여총액의 현재가치 보다 적을수도 있고 클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우선 큰 경우만을 고려 해보자.

즉, $\int_0^R \theta W(t) dt < \int_R^T P(R, W(t)) dt$ 을 의미하며 연금부담의 후세대전가가 발생하는 경

우이다.

이 경우의 전생애효용을 극대화 시키는 저축수준은 아래 식 (5)에서 구해진다.

$$\frac{\partial V}{\partial s} = \int_R^T U_2(s^*) - \int_0^R U_1(s^*) = 0 \quad (5)$$

이 경우 식 (3)의 θ 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은퇴기간에 수령하는 연금총액은 식 (3)보다 크다. 한계효용을 동일 만들기 위해서는 저축율, s^* 는 s' 보다 더 낮아야 한다($s > s' > s^*$). 즉, 후세대전가가 되는 확정급여방식의 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확정양출시 보다 저축율이 더 하락 함을 알수 있다.

2. 은퇴시기와 저축율

직업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은퇴시기는 달리 결정될수 있다. 개인의 취향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는 경우, 은퇴시기는 직업의 분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은 대체적으로 직장근로자보다 자유스럽게 은퇴시기를 결정할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은퇴시기가 상대적으로 늦다. 직장근로자들의 경우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정년을 맞을수밖에 없지만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다. 이와같이 은퇴시점의 차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저축율의 변화에도 차이를 보일수 있다. 예를들어 자영업자들이 사망직전까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은퇴기간은 0($R=T$) 이 된다. 연금제도가 도입되기전 은퇴기간이 없는 자영업자의 전생애 효용함수는 아래 (6)과 같다.

$$V = \int_0^T U_1[W(t) - \theta W(t)]dt \quad (6)$$

이 경우 이들은 노후생활을 대비한 저축을 할 필요가 없어 근로기간의 저축은 0이 된다. 위의 식 (1), (3), (5)에서 은퇴기간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저축은 모두 0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클것으로 예상된다. 은퇴기간이 없는 극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직장근로자보다 은퇴시기가 일반적으로 늦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저축율의 하락은 직장근로자 보다 규모가 클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은퇴시기(R')가 직장근로자들의 은퇴시기(R) 보다 늦은 경우 이들의 생애주기효용함수는 아래와 같다.

$$V = \int_0^{R^s} U_1 [(W(t) - \theta W(t) - s^s W(t)(1-\theta))] dt + \\ \int_{R^s}^T U_2 [S(s^s, R^s, W(t)) + P(R^s, W(t))] dt \quad (7)$$

앞의 식 (3) 과 비교해 여타조건이 동일하고 은퇴시기만 늦어지는 경우 저축율은 감소함을 알수 있다($s > s^s$). 은퇴시기가 늦어진면 근로기간이 길어져 낮은 저축율로도 짧은노후에 동일한 효용을 누릴수 있기 때문이다

($\int_0^{R^s} U_1(s^s) - \int_0^R U_1(s) = 0$). 즉, 국민연금이 도입됨에 따른 저축율의 하락은 직장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하락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계량분석

계량분석의 목적은 위 모델에서 제시한것과 같이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실제로 세집단간 저축율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통계자료는 1993년 한국가구페널조사(KHPS) 이다. 1993년에는 국민연금이 도입된지 6년이 경과된 시점이고 보험료도 1992년의 3%에서 6%로 인상되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일반직장근로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을 노후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직역연금의 보험료는 1993년에 11%로 국민연금의 거의 2배에 달하며 연금급여도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당시급여수준을 적용하여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의 경우 연금을 노후소득의 일환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훨씬 클수 있다. 따라서 계량분석에서는 일반직장근로자와 특수직역연금대상자간의 저축율의 차이가 1993년에 나타나고 있는지와 자영업자들의 은퇴시기결정이 저축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1. 통계자료

한국가구페널조사는 총 4,500가구의 10,460 가구원에 대한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에 대한 각종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총 4,500가구중 분석에 필요한 변수가 누락된 가구와 직장근로자나 자영업, 자유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나 가구월소득이 60만원 미만이거나 1000만원이상인 가구도 제외 시켰다. 가구월소득 하한선을 60만원으로 정한 것은 각 직역별로 소득의 하한선을 동일하게 하기위해서이다. 직장근로자를 특수직역연금대상자와 일반직장근로

자로 분류하였는데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의 최저가구소득이 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구주의 연령이 39세에서 59세이하인 가구만을 포함시켰다. 39세이하의 계층은 은퇴후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가 대부분이어서 그룹별 차별화가 어려울 가능성성이 크기 때문이다. 59세 이상계층은 이미 은퇴하여 노후대책을 관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서이다.

〈표 2〉 분석대상별 주요변수의 평균값

변수명	변수설명	표본 전체	직장 근로자	특수직역 연금대상자	자영 업자
Group0	직장근로자(명)	1020	426		
Group1	특수직역연금대상자(명)	1020		136	
Group2	자영업자(명)	1020			458
Saverate	연간저축율 (연간소득 - 연간소비지출) / 연간소득(%)	0.369	0.394	0.435	0.327
Hold	연금보험상품보유여부 (1:보유, 0: 미보유)	0.399	0.424	0.477	0.351
Income	월가구소득(만원)	179	171	183	185
House	주택소유여부(%) 1:소유, 0: 무소유	0.72	0.69	0.88	0.70
Age	가구주 연령(세)	46.7	46.2	48.9	46.6
Education	가구주 교육수준(년) 9:중졸, 12: 고졸 14:전문대졸	10.9	10.9	12.4	10.4
Sex	성별(%) 남성:1 여성:0	0.95	0.96	0.97	0.94
City	서울 및 광역시거주여부(%) 1:Yes, 0:No	0.63	0.64	0.55	0.63
Jongyo	종교소유 여부(%) 1:소유, 0: 무교	0.57	0.59	0.61	0.55
Health	건강에 대한 만족정도: 1:매우불만 ~ 5:매우만족	3.36	3.37	3.38	3.35
Leisure	여가를위해 근로시간을 줄일용의가 있는지 여부(%) 1:Yes 0: No	0.33	0.30	0.38	0.36
Expect	내년가구경제사정에 대한 기대정도(1: 매우나빠질것이다 ~ 5:매우좋아질것이다)	2.9	2.9	2.7	3.1

최종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구의 수는 1,020가구였다. 총 1,020가구 중 가구주가 일반직장근로자인 가구는 426가구였고, 가구주가 특수직역연금대상자인 가구의 수가 136가구, 그리고 가구주가 자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458가구이다. 특수직역연금대상자 136명 중 사학연금대상자가 54명, 공무원연금대상자가 75명 그리고 군인연금대상자가 7명이다.

2. 계량모델

가) 저축율추정식

위의 전생애효용함수에서 밝힌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저축효과를 보기위해서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을 proxy로 이용하였다. 즉, 국민연금제도가 확대되고 보험료수준도 상향조정되는 경우 현재의 직역연금과 유사한 영향을 가입자들에게 미칠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특히, 저축효과에 있어서는 일반직장근로자와 직역연금대상자간의 차이를 봄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및 제도성숙이 가입자들에게 미칠 저축에대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begin{aligned} Saverate = & \beta_0 + \beta_1 Group0 + \beta_2 Group1 + \beta_3 Age + \beta_4 Education + \beta_5 Sex \\ & + \beta_6 Health + \beta_7 Income + \beta_8 House + \beta_9 Jongyo + \beta_{10} City \quad (8) \\ & + \beta_{11} Leisure + \beta_{12} Expect \end{aligned}$$

저축율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변수가 없어 연간소득에서 연간소비지출을 감한 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Saverate)을 사용하였다. 아래 <표 3>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저축율을 의미하는 Saverate는 일반직장근로자(Group0)는 자영업자(Group2)에 비해 저축율이 높을 확률이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수직역연금대상자(Group1)들 또한 자영업자(Group2)에 비해 저축율이 높을 확률이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특수직역연금대상자(Group1)와 일반직장근로자(Group0)는 저축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3년에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6%로 인상되어 일반직장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노후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위의 생애주기효용함수모델에서 제기된바와 같이 은퇴기간을 강제받지 않아 일반직장근로자나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에 비해 늦출수 있어 노후소득을 금융상품을 통하여 보장받으려는 정도가 낮을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수준과 저축률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가구주의 저축율이 여성에 비해 낮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교

〈표 3〉 연간저축율의 추정식

종속변수 (Saverate)		추정계수	t-value	P> t
Group0		0.0808	3.220	0.001
Group1		0.1009	2.721	0.007
	Group1	0.0201	0.540	0.589
	Group2	-0.0808	-3.220	0.001
Age		-0.0006	-0.305	0.760
Education		-0.0081	-4.100	0.000
Sex		-0.1351	-2.271	0.023
Health		0.0139	1.173	0.241
Income		0.0015	12.734	0.000
House		-0.0365	-1.363	0.173
Jongyo		-0.0221	-0.938	0.348
City		-0.058	-2.407	0.016
Leisure		-0.014	-0.575	0.566
Cons(상수)		0.3426 0.4235	2.473 3.079	0.014 0.002

$$F(12, 1007) = 16.05 \quad \text{Prob}>F=0.0000 \quad R^2 = 0.1606$$

$$\text{Adjusted } R^2 = 0.1506$$

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축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에 대해 만족할수록 저축율이 높아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즉, 건강에 만족한다는 것은 은퇴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되므로 저축율을 높일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고 본다.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저축율이 높으나 주택을 보유와 저축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서울 및 광역시거주자 일수록 저축율이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도시거주자들의 소비성향이 높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저축율과 종교를 갖고있는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가

를 위해 근로시간과 소득을 줄일 용의가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저축율에는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 보험·연금상품소유 추정식

두 번째 분석은 금융자산의 범위를 보험 및 연금상품으로 축소하는 경우, 이와같은 금융자산을 소유하는데 있어서 직역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보험 및 연금상품을 소유하는지여부를 나타내는 Hold이고 1인 경우 소유한 경우, 0인경우는 소유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설명변수는 금융자산비율추정식과 동일하다.

$$\begin{aligned}
 Hold = & \beta_0 + \beta_1 Group0 + \beta_2 Group1 + \beta_3 Age + \beta_4 Education + \beta_5 Sex \\
 & + \beta_6 Health + \beta_7 House + \beta_8 Jongyo + \beta_9 House + \beta_{10} City + \beta_{11} Leisure \\
 & + \beta_{12} Expect
 \end{aligned} \tag{9}$$

금융상품을 보험 및 연금상품으로 국한 시키는 경우, 일반직장근로자와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에 비해 자영자들이 보험 및 연금상품을 소유할 확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표 4>에서 확인 할수 있다. 따라서 자영자의 경우, 은퇴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할수 있다는 것이 연금 및 보험상품소유가능성을 낮게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일반근로자나 특수직역연금대상자 모두 연금이나 보험상품을 보유할 확율이 자영업자에 비해 높다는 것은 은퇴시기를 결정할수 있는 효과가 특수직역연금에 의한 노후보장효과보다도 크게 나타남을 알수 있다. 앞에서 추정된 <표 3> 과 차이가 나는 변수로는 연령(Age), 교육수준(Education), 성별(Sex), 서울 및 광역도시거주여부(City)변수등이다. 연령은 앞서의 저축율추정식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부호가 바뀐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일수록 연금 및 보험상품을 보유할 확율이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어 저축율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거주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표 4〉 보험 및 연금자산소유결정 Probit 추정식

종속변수(Hold: 0, 1)	추정계수	z-value	P> z	
Group0	0.1978	2.235	0.025	
Group1	0.3834	2.969	0.003	
	Group1	0.1855	1.439	0.150
	Group2	-0.1978	-2.235	0.025
Age	-0.0369	-4.883	0.000	
Education	0.0120	1.711	0.087	
Sex	0.4740	2.010	0.044	
Health	-0.1778	-0.425	0.671	
Income	0.0018	4.204	0.000	
House	-0.0320	-0.340	0.734	
Jongyo	0.0528	0.635	0.525	
City	-0.0634	-0.746	0.455	
Leisure	0.1119	1.295	0.195	
Expect	-0.0185	-0.348	0.728	
Cons(상수)	0.5219 0.7198	1.036 1.439	0.300 0.150	

표본수: 1,020, $\chi^2(12)=65.78$ Prob> $\chi^2=0.0000$ Psuedo $R^2=0.0479$, Log Likelihood=-653.173

V. 결 론

본 논문은 국민연금제도가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자영자에게 확대실시됨과 동시에 개정연금법에 의해 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향후 민간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모든 소득활동자들은 자신들의 전생애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상 근로기간의 한계효용과 은퇴기간의 한계효용을 동일하게 하는 수준의 저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연금제도의 도입 및 제도의 성숙화는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

존의 저축수준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모델화 하였다.

계량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소득활동자들을 일반근로자, 특수직역연금대상자, 그리고 자영업자로 구분하였을 때 저축율은 일반직장근로자와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이 자영업자에 비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반직장근로자와 특수직역연금대상자간에는 저축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실은 통계자료가 1993년도의 가구실태이므로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지 6년이 경과한 상태이며 보험료도 1992년의 3%에서 6%로 인상되어 일반직장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노후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이들 세 집단 간 차이점은 연금형태로 노후대책을 마련한 집단, 퇴직금에 의존하는 집단, 그리고 은퇴시기를 구속받지 않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특수직역연금이 퇴직금과 다른 것은 실질적인 누진율의 차이이다. 1993년 가구폐널조사에서도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의 현직장에서의 평균근속연수는 10.2년인 반면, 특수직역연금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20.9년 이었다. 즉,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자의나 타의에 의해 전직 및 이직등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여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의 연금누진율 보다 퇴직금에 대한 누진율이 실질적으로는 낮다. 따라서 일반직장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노후대책으로 기대하는 정도는 특수직역연금대상자들에 비해 낮을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성숙화는 일반직장근로자와 자영자들의 저축율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199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반직장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노후소득으로 인지하여 저축율의 조정이 있었을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자산을 연금 및 보험으로 국한 시키는 경우, 자영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연금 및 보험상품을 보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는 경우, 민간의 저축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그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날 집단은 자영자라는 것을 본 실증분석을 통해 알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개선」, 1997
대우경제연구소, 「한국가구폐널조사」, 1994
- Kreuger, Alan B. & Pischke, Jorn-steffen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on Labor Supply: A cohort Analysis of the Notch Generation", NBER No. 3699 May, 1991.
- Pellechio, Anthony "Social Security & The Decision to Retire", NBER No. 734 August, 1981
- Quinn, J.F. Burkhauser, R.V. & Myers, P.A. "Passing the Torch: The Influence of Economic incentives on Work and Retirement",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90.
- Turner, John A. "Pension Policy for a Mobile Labor Force", Upjo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90.